공익신탁 계약서(은행용)

제1조 (신탁목적)

위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지정된 공익사업에 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사용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.

제2조 (명칭)

이 공익신탁의 명칭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바와 같다.

제3조 (사 업)

이 공익신탁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하다

- ① 기부금의 모집 및 집행
- ② 기부금 집행을 위한 신탁재산의 보관 및 운용
- ③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4조 (신탁재산)

- ① 신탁재산의 금액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한다. 호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. 다만, 신탁재산을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②신탁원본은 제1항의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 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.
- ③ 수탁자는 추후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신탁원본에 포함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는 제1항 단서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 또는 기부가 지 계산한다. 있을 경우에는 그 종류, 총액 및 사용내역을 신탁관리인에게 보고를 하고,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 보고 및 신고 후 준가격) × 1,000]의 방법으로 계산한다. 월별로 보고 및 신고를 할 수 있다.

제5조 (신탁재산의 운용)

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 다.

- 1. 국채,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.인수 또는 제15조 (신탁재산 계산의 차입) 매입
- 2.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
- 3.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

②신탁재산은「공익신탁법」제11조에 따라 이 공익신탁이 정하는 공 익사업 및 그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

③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
제6조 (신탁기간)

이 공익신탁의 신탁기간은 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이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본 계약서 제18조 **제17조 (신탁조항의 변경)** 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7조 (신탁관리인)

①이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관리인을 정한다. ②수탁자는 신탁관리인이 유고 또는 사임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 할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조항을 변경 할 수 있다. 수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신탁관리인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직무 및 「공익신탁법」에서 정 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8조 (사업연도)

이 공익신탁에서 「공익신탁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 만, 최초 사업연도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이 공익신탁 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9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시)

①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 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,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 세서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사항을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을 하여야 한다. 그 제공을 하는 때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제22조 (계약내용의 보충)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신탁재산의 사용)

①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혜처에 기부금 에서 정한다. 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한다.

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지급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사

③수탁자는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재 산을 인출할 때에는 위탁자의 인출지시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 고 인출할 수 있다.

제11조 (제세공과금 및 사업비의 지출)

①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.

②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익신탁사무 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익계산 및 신탁원본)

①이 공익신탁의 이익은 기준가격방식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기준 가격방식에 따른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기업회계기준서」제5004

제13조 (기준가격의 계산)

①계산시점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 감한 금액 (신탁순자산총액)을 직전일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

②이 공익신탁의 좌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[(신탁재산의 가액 / 기

새로 누적된 신탁 또는 기부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③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초로 설정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,000좌당 1,000원으로 한다.

제14조 (신탁보수)

수탁자가 받는 신탁보수는 신탁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1,000분의 2 이며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신탁재산에서 차감한다.

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관리인의 승인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탁재산의 계 산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다.

제16조 (수탁자의 사임)

①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②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,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과 신탁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제2항의 인계를 종료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 나 신탁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법

제18조 (신탁의 종료 등)

①이 공익신탁은 「공익신탁법」에 따라 인가취소가 된 경우, 「신탁법」 에 따른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한다.

②이 공익신탁은 신탁관리인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.

③이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는,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탁관리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 을 한 후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Cł.

제19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신탁재산 은「공익신탁법」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.

제20조 (신탁사무처리지)

이 공익신탁의 사무는 수탁자의 본점 및 신탁부 사무소에서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 (효력 발생일)

이 계약은「공익신탁법」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신탁 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공익신탁의 인가를 받은 날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함께 첨부한 '공익신탁 가입신청서'에 기재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 를 이루며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공익신탁 가입신청서'

공익신탁 계약서(고객용)

제1조 (신탁목적)

위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지정된 공익사업에 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사용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.

제2조 (명칭)

이 공익신탁의 명칭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바와 같다.

제3조 (사 업)

이 공익신탁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하다

- ① 기부금의 모집 및 집행
- ② 기부금 집행을 위한 신탁재산의 보관 및 운용
- ③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4조 (신탁재산)

- ① 신탁재산의 금액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한다. 호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. 다만, 신탁재산을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②신탁원본은 제1항의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 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.
- ③ 수탁자는 추후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신탁원본에 포함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는 제1항 단서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 또는 기부가 지 계산한다. 있을 경우에는 그 종류, 총액 및 사용내역을 신탁관리인에게 보고를 하고,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 보고 및 신고 후 준가격) × 1,000]의 방법으로 계산한다. 새로 누적된 신탁 또는 기부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③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초로 설정되는 월별로 보고 및 신고를 할 수 있다.

제5조 (신탁재산의 운용)

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 다.

- 1. 국채,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.인수 또는 제15조 (신탁재산 계산의 차입) 매입
- 2.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
- 3.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

②신탁재산은「공익신탁법」제11조에 따라 이 공익신탁이 정하는 공 익사업 및 그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

③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.

제6조 (신탁기간)

이 공익신탁의 신탁기간은 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이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본 계약서 제18조 **제17조 (신탁조항의 변경)** 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7조 (신탁관리인)

①이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관리인을 정한다. ②수탁자는 신탁관리인이 유고 또는 사임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 할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조항을 변경 할 수 있다. 수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신탁관리인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직무 및 「공익신탁법」에서 정 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8조 (사업연도)

이 공익신탁에서 「공익신탁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 만, 최초 사업연도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이 공익신탁 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9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시)

①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 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,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 세서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사항을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을 하여야 한다. 그 제공을 하는 때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제22조 (계약내용의 보충)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신탁재산의 사용)

①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혜처에 기부금 에서 정한다. 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한다.

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지급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사

③수탁자는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재 산을 인출할 때에는 위탁자의 인출지시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 고 인출할 수 있다.

제11조 (제세공과금 및 사업비의 지출)

①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.

②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익신탁사무 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익계산 및 신탁원본)

①이 공익신탁의 이익은 기준가격방식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기준 가격방식에 따른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「기업회계기준서」제5004

제13조 (기준가격의 계산)

①계산시점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 감한 금액 (신탁순자산총액)을 직전일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

②이 공익신탁의 좌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[(신탁재산의 가액 / 기

날의 기준가격은 1,000좌당 1,000원으로 한다.

제14조 (신탁보수)

수탁자가 받는 신탁보수는 신탁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1,000분의 2 이며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신탁재산에서 차감한다.

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관리인의 승인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탁재산의 계 산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다.

제16조 (수탁자의 사임)

①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②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,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과 신탁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제2항의 인계를 종료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 하여야 한다.

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 나 신탁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법

제18조 (신탁의 종료 등)

①이 공익신탁은 「공익신탁법」에 따라 인가취소가 된 경우, 「신탁법」 에 따른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한다.

②이 공익신탁은 신탁관리인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다.

③이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는,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탁관리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 을 한 후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Cł.

제19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신탁재산 은「공익신탁법」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.

제20조 (신탁사무처리지)

이 공익신탁의 사무는 수탁자의 본점 및 신탁부 사무소에서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 (효력 발생일)

이 계약은「공익신탁법」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신탁 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공익신탁의 인가를 받은 날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함께 첨부한 '공익신탁 가입신청서'에 기재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 를 이루며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공익신탁 가입신청서'